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50
----------	-----------

제안일자 : 2023년 6월 19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해 안 제8조제1항의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지원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지원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함. (안 제8조제1항)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p> <p>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 ----- ----- ----.</p> <p>1. -----</p> <p>2. -----</p> <p>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p> <p>② ----- -----.</p>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순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이하 “공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 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
2.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

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